

영양 정보표시 필요조건

보다 규모가 큰 패스트 푸드 및 스낵 식품 체인점 (예로 퀵 서비스 레스토랑 및 슈퍼마켓, 피자, 커피, 제빵제과, 아이스크림, 도넛, 음료, 샐러드 체인점)들은 법적으로 매장에서 영양정보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.

준수의무가 있는 식품 판매점

'표준식품 품목'을 판매하는 '표준 식품 판매점'들만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.

표준 식품 품목은:

- 바로 먹을 수 있는 식품 (미리 포장되지 않은)으로
- 표준화된 제공량과 성분으로 1 회 혹은 여러 회 제공량으로 판매되며 (예로 밀 딜 (meal deal) 처럼 한 가지 이상의 식품 품목 조합이 포함되기도 함)

- 메뉴에 표시되거나 가격표와 라벨을 부착해 진열됩니다.

표준식품 판매점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준수의 의무를 지닙니다:

- NSW 내에 20 군데 이상의 매장이 있거나
- 전국적으로 50 군데 이상의 매장이 있을 경우.

이 법규의 적용대상은 직영점, 프랜차이즈 가맹점 혹은 체인점으로 운영되는 업체들입니다.

실례

1. NSW 내에 15 개 매장 그리고 타주에 40 개 매장을 운영하는 햄버거 체인점. 전국적으로

50 군데 이상의 매장이 있으므로 NSW 내의 매장들은 준수의무를 지닌다.

2. NSW 내에 22 개 매장을 운영하는 커피 체인점. 22 개 매장 모두 준수의무가 있다.

슈퍼마켓

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은 오직 그 일부만 이런 법규의 영향을 받습니다. 그 예로는:

- 따뜻한 치킨
- 델리 샐러드류
- 따뜻한 델리 식사류 (예로 라자냐, 소시지 롤)
- 특정 제빵제과 제품들 (예로 치즈 앤 베이컨 롤, 커스터드 타트, 도넛, 자르지 않은 케이크)
- 스시 및 사시미가 있습니다.

면제

다음과 같은 업체들은 필요조건 준수를 면제 받게 됩니다.

- 편의점
- 주유소
- 출장요리 제공업체
- 테이크 어웨이 서비스를 하지 않는 레스토랑
- 보건의로 시설에서 판매되는 소매 식품.

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정보

표준식품 판매점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영양정보 요소들을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:

- 표준식품 품목 별 포함 열량 (킬로줄 'kJ'로 표시)
- 참조문 '성인의 1 일 평균 열량 섭취량은 8700 kJ 입니다'

영양정보 표시를 어디에 해야 하는가

영양정보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하는 조건은 매장의 인쇄 및 전자 메뉴 둘 다에 적용됩니다 (메뉴 보드, 포스터, 전단, LCD 스크린, 진열장 정가표, 드라이브-스루 메뉴 및 슈퍼마켓 진열대 가장자리의 가격표). 또한 매장 외부에서 배포되어 고객들이 보고 주문할 수 있는 메뉴도 (인쇄된 전단이나 인터넷) 필요조건 적용대상입니다.

전자 혹은 인쇄 광고물에는 (빌보드, 신문, 잡지, 텔레비전) 킬로줄 함량을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.

킬로줄 (kJ) 함량 표시

각 표준식품의 킬로줄 함량은 명확히 읽을 수 있어야 하며 각 품목의 가격 옆에 같은 종류의 글꼴로 또 적어도 같은 크기의 글꼴로 표시해야 합니다 (혹은 가격표시가 없을 경우, 각 품목 명 대비).



Department of
Primary Industries
Food Authority

More resources at foodauthority.nsw.gov.au

[nswfoodauthority](https://www.facebook.com/nswfoodauthority)

[nswfoodauth](https://twitter.com/nswfoodauth)

슈퍼마켓들은 kJ 정보표시를 할 때 영양정보 표시판 (NIP)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, 즉 100g 당으로 하면 됩니다. 이 정보 역시 해당 품목의 총 가격 (혹은 단위 가격)과 같은 종류의 글꼴 및 적어도 같은 크기의 글꼴로 표시해야 합니다.

여러 다른 크기와 양으로 판매되는 표준식품 품목들은 (예로 소, 중, 대) 별도의 식품 품목으로 취급하여 각각 킬로줄 표시를 해야 합니다.

참조문 '성인의 1 일 평균 에너지 섭취량은 8700 kJ' 표시

이 참조문은 명확히 읽을 수 있어야 하며 메뉴상의 눈에 잘 띄는 위치와 각 구역이나 진열대에 배치해야 하며 (명확히 해당 표준 식품 품목과 연관지을 수 있도록) 또한 가장 큰 글꼴로 적힌 표준식품 품목명과 같은 종류의 글꼴로 그리고 적어도 동일한 크기로 표시해야 합니다.

법적으로 정보표시 의무가 없는 표준식품 판매점들은 이런 영양정보 표시를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, 그렇게 할 경우, 모든 상기 필요조건들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.

시험적 상품

시험적으로 신상품 컨셉을 다섯 개

이하의 매장에서 연이어 60 일 이하의 기간동안 시험 판매하는 표준식품 판매점들은 이런 품목들에 관해 영양정보 표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.

영양 정보 계산법

영양 정보를 확정하려면, 각 표준식품 품목의 평균 열량 함량을 식품표준규약의 표준 1.2.8 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(100g 당이 아니고 반드시 식품 품목당 총량에 관한 계산이 이루어 지도록 필요한 수정을 가하여). 평균 kJ 함량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 예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:

- 호주 뉴질랜드 식품표준청 (FSANZ)에서 개발한 온라인 영양 표시판 계산기
- 영양 분석 소프트웨어 (예를 들어 제조사의 권장사항대로 사용한 FoodWorks®)
- 실험실 분석
- 식품분석표 및 데이터베이스.

계산된 킬로줄 수치는 끝자리가 10kJ 단위가 되도록 반올림해도 됩니다. 이러한 관련법규들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면 해당 업체들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소비자 정보

본 이니셔티브는 소비자들에게 '신속한 선택 (Fast Choices)' 라고 홍보됩니다.

8700.com.au 를 참조하십시오.

상세 정보

- 106K-106R 항
[식품법 2003](http://www.foodstandards.gov.au/legislation/nsw.gov.au)
[legislation.nsw.gov.au](http://www.legislation.nsw.gov.au)
- 30-37 조항
식품 규정 2015
[legislation.nsw.gov.au](http://www.legislation.nsw.gov.au)
- 표준 1.2.8
식품표준규약
[foodstandards.gov.au](http://www.foodstandards.gov.au)
- 식품청 웹사이트의 메뉴 라벨 부착하기 부분을 찾아 보십시오
[foodauthority.nsw.gov.au/about-us/science/evaluating-what-we-do/kJ-information-menu-labelling](http://www.foodauthority.nsw.gov.au/about-us/science/evaluating-what-we-do/kJ-information-menu-labelling)
- 1300 552 406

NSW 식품청 (Food Authority) : NSW 식품청은 뉴 사우스 웨일즈 주의 확실한 식품 안전과 올바른 라벨 부착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입니다. 식품청은 식품의 안전생산, 보관, 수송, 홍보 및 준비에 관한 정보제공 및 규제를 통하여 식중독의 최소화를 위해 소비자, 업계 및 기타 정부기관과 함께 노력합니다. 주의: 상기 정보는 일반적인 요약으로 모든 상황을 망라하지는 않습니다. 식품업체들은 식품 표준규약 및 [식품법 2003](http://www.foodstandards.gov.au) (NSW)의 모든 조항들을 준수해야 합니다.



6 Avenue of the Americas, Newington NSW 2127
PO Box 6682, Silverwater NSW 1811
T 1300 552 406
contact@foodauthority.nsw.gov.au
ABN 47 080 404 416

More resources at foodauthority.nsw.gov.au



nswfoodauthority



nswfoodauth